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1174호, 2022. 12.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에 적힌 정보를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서식 중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도식(圖式)을 공개 대상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그 건축물과 면적이 유사한 다른 건축물의 연간 표준에너지 사용량을 대비하여 표시하는 도식으로 대체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건축물(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자료

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74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 공동주택 [] 업무시설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준공연도
	소재지	
	연면적/전용면적 m ² / m ²	주용도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 현황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1+++ ~ 7등급)	인증등급	1차 에너지 소요량	kWh/m ²
	유효기간 . . . ~ . .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1 ~ 5등급)	인증등급	에너지 자립률	%
	유효기간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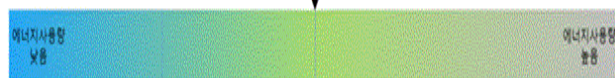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한에 적힌 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등급 인증을 받은 결과입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한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은 건축물 자체의 물리적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값으로, 다음의 단위면적 당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표의 '에너지 사용량'(건축물의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변동되는 에너지의 사용량)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단위면적 당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에너지 사용량	도시가스	kWh/m ² · 년	온실가스 배출량	kg/m ² · 년
	지역냉난방	kWh/m ² · 년		
	열 (a)	kWh/m ² · 년		
	전 기 (b)	kWh/m ² · 년		
	합 계 (a+b)	kWh/m ² · 년		

이 건축물과 유사한 면적인 다른 건축물의 연간
표준에너지 사용량(kWh/m²·년)



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kWh/m²·년)

이 건축물의 단위면적 당 에너지 사용량(열+전기)은 이 건축물과 유사한 면적인 다른 건축물(이 건축물과 같은 시·도에 있는 건축물)의 표준에너지사용량 대비 %(열 %, 전기 %)입니다.

* 우리집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4월 중 새로 공개됩니다(전년도에 사용한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CI

운영기관 CI